

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 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86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.

발 의 자 : 이광희·송재봉·강준현  
양부남·권향엽·김우영  
박홍배·김성희·서미화  
전진숙·박정현·윤건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교부·통일부·법무부·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이전 대상, 이전 방법과 시기, 소요 비용 및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크지 않음.

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며,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. 그러나 현행 이전계획에는 이러한 정책적 효과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

방안을 포함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·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 16조).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 
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
6.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) ① (생    략) | 제16조(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다음 각 호의 부(部)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.   | ②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|
| 1. ~ 5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|
| 6. <u>성평등가족부</u>               | <u>&lt;삭    제&gt;</u>          |
|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 ③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|
| 1. ~ 4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| 5. <u>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</u>        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| <u>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<u>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</u>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</u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</u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촉진하기 위한 방안</u>              |
| 5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|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                |
| ④ ~ ⑥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|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